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학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, 일부 대학에서 훈련 기간을 결석·감점처리 하는 등 「예비군법」에 명시된 학업보장 조항 위반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.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, 실효성 있게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 범위와 대학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할 수 없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의무화(제11조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방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7.12.~8.21.)

3) 행정규제 : -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)

① 학교의 장은 「예비군법」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

② 학교의 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 신설 >	제11조의2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) ① 학교의 장은 「예비군법」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 ② 학교의 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.

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33, 6964